

서울특별시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4. 22.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6. 4. 8.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6. 4. 15.

다. 상정일자: 제283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6. 4. 2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가. 제안이유

-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적이고 책임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위탁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리 운영 위탁기간 1년 규정 삭제 (안 제7조)
- 기타 용어 정비(안 제5조 및 제8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26. 3. 5. ~ 2026. 3. 25. (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3. 검토보고(전문위원 귀하)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4월 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해 4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 중인 다른 기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마포구 노동자종합센터 운영 현황

-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2020년 2월 개소 이후 1년 단위로 재위탁 모집 공고를 통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되어 왔음.

「마포구 노동자 종합센터」 현황

- 사업대상: 노동 관련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구민 및 관내 사업장 노동자
- 위 치: 마포구 매봉산로 18, 마포창업복지관 305호
- 수탁기관 : 마포노동자공동체 일꿈(대표 김태현) ※ 센터장: 조영권
- 규모 및 인력: 65㎡(사무실, 상담실) / 4명(센터장 1, 팀장 3)
- 위탁기간: 2025. 9. 1. ~ 2026. 8. 31. (1년)
- 위 탁 금: 250,000천원(구비)

- 그동안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위탁기간을 1년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¹⁾
- 또한, 다른 자치구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1년 단위 위탁 운영은 상대적으로 예외적인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임.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²⁾」

- 3년 위탁운영: 5개 구(은평, 영등포, 관악, 중랑, 강서)
- 2년 위탁운영: 4개 구(서대문, 구로, 성북, 도봉)
- 1년 위탁운영: 4개 구(마포, 성동, 노원, 광진)

- 아울러 고용협력과 소관 다른 민간위탁 시설의 실제 위탁기간도 대체로 3년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음.

1) 특히 제2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2026. 1. 29.)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과정에서도, 우리 구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다른 민간위탁 기관과의 형평성에 맞게 2년 또는 3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홍지광 의원)

2) 붙임1 참조: 타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 고용협력과 민간위탁 운영 현황 >

연번	시설명	조례상 위탁기간	실제 위탁기간
1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5년 이내	3년
2	마포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3년 이내	3년
3	서울청년센터 마포	마포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3년) 준용	3년
4	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 나루		3년

- 따라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역시 다른 민간위탁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개별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민간위탁 조례의 일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보다 탄력적인 위탁기간 설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준비를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 주요 내용

(1) 관리 운영 위탁(안 제7조)

- 안 제7조제3항의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복지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위탁 관련 사항을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현행	개정안
<p>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u>협약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u> <u>다만,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p>④ <u>근로복지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u></p>	<p>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근로복지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u></p> <p><u><삭제></u></p>

(2) 용어 정비(안 제5조 및 제8조)

- 제5조의 “관내”를 “소재”로 변경하는 사항은 법령 및 행정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고려한 단순 용어 정비로 보임.
- 제8조제3호 중 “보조금”을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경비 등”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는 실제 재정 지원 형태가 보조금뿐 아니라 위탁운영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반영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재정 지원의 성격과 관리 기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명확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현행	개정안
제5조(이용자격) 근로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이용자격) ----- ----- ----- 소재 ----- ----- -----.
제8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보조금에 대하여 제4조의 사업 목적 외로 사용 금지 4. ~ 7. (생략)	제8조(수탁운영자의 의무)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경비 등----- 4. ~ 7. (현행과 같음)

(3) 부칙 조항(적용례 신설)

- 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여 개정된 제7조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근로복지시설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구 민간위탁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동안 위원회에서 제기되어 온 사항을 반영하여 위탁기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위탁기간 규정이 삭제될 경우 향후 위탁기간의 설정, 재위탁 여부 및 평가 방식 등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운영되게 되는 만큼,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평가 체계가 적절히 운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붙임 1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연번	자치구	근거 조례	위탁기간	조례상 위탁기간
1	은평	은평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3년	규정 없음
2	영등포	영등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년	규정 없음
3	관악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년	3년
4	종량	종량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년	규정 없음
5	강서	강서 노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년	규정 없음
6	서대문	서대문구 노동 기본 조례	2년	규정 없음
7	구로	구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조례	2년	3년
8	성북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년	규정 없음
9	도봉	도봉구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년	규정 없음
10	성동	성동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운영·조례	1년	3년
11	노원	노원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년	규정 없음
12	광진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년	규정 없음
13	마포	마포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년	1년

※ 미설치 자치구(9):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동작, 양천, 종로, 동대문, 중구('26년부터 미운영)

※ 자치구 직접운영(3): 강북, 용산, 금천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이하 “근로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노동조합(지부·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